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정함(안 제4조)

나.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함(안 제5조)

1)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용도를 구체화함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함(안 제6조)

1) 당연직 8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2)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9,412백만원 확보

다. 협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27.~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재난관리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 등 모든 금액과 그 이자 등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3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안전총괄과장·건설과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나. 관련조문: 제5조(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9,412	500	500	500	500	1,412

3. 관련 의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514백만원)

1.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84백만원
2. 재난문자전광판 구축: 193백만원
3. 폭염대비: 26백만원
4. 한파대비: 93백만원
5. 가축질병 예방사업: 118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장봉기